

---

# [기관 운영자를 위한] 성폭력·인권침해 대처 및 예방 안내

---

2019

## 부산대학교 인권센터

주소	(46241)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, 기계기술연구동 405호	
홈페이지/이메일	<a href="https://equality.pusan.ac.kr">https://equality.pusan.ac.kr</a>	humanrights@pusan.ac.kr
행정실	051-510-7999	
성평등상담실	051-510-7890	safety@pusan.ac.kr
인권상담실	051-510-7942	

---

## 구성원 간 문제가 있다면

---

○ **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**

- 양 당사자들이 모두 구성원이라 평소 친분과 신뢰관계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
- 특히 양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을 묻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십시오.
- 당사자에게 신고절차 및 센터를 안내해 주십시오.
-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- 제3자가 신고했을 때 센터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해도 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○ **당사자 간 분리되도록 해 주십시오.**

- 양 당사자들이 가까이 있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과 시간을 달리 배정해 주십시오.
- 이때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

○ **조용하고 침착하게 피해자에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.**

- 당사자가 고충을 상의해 왔다면 우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 주십시오.
-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.
-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.
-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.

○ **센터에서 처리중이라면 기다려 주십시오.**

-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더라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.
- 센터에서 조사과정을 안내하고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조치를 상의 드리겠습니다.

○ **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주십시오.**

-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.
- 피해자의 평소 생활에 대한 평가도 자제해 주십시오.
-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의논할 때에도 피해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.

○ **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.**

- 피해자를 의심·부인·비난·협박·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.
- 피신고인이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.

---

## 피해자만이 구성원이라면

---

### ○ 신고하도록 해 주십시오.

- 인권침해 또는 성폭력·성희롱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.
-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타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거나 법적 조치를 딱히 취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고소 등 법적 처리와 센터의 처리는 별개입니다.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간 분리나 상담, 교육 등 학교 내 조치를 필요로 한다면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, 현재 부산대 구성원이 아니라도,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부산대학교 구성원이었다면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가해자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

### ○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하니 안내해 주십시오.

- 상담은 전화/면접/이메일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. 만약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.
- 아무런 서류 작성 없이 자유롭게,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에 대한 의료, 법률 등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면 연계지원도 해드립니다.

### ○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합니다.

- 사건조사와 처리를 원하면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,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사건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중단했던 사건은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원하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도 됩니다.
- 피해자가 원하면 당사자 간 합의도 가능합니다.
-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면, 상담만 받아도 됩니다.

### ○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.

- 사건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비밀에 붙여지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.
- 상담원을 제외하고, 조사심의위원도 사건 조사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름과 소속 등 신원을 알지 못합니다.

---

## 피해자만이 구성원이라면

---

○ **피신고인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**

- 피해자는 피신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1. 성희롱·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
  2. 신고인의 인적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
  3. 피해자 등과 접촉하지 않으며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
  4.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
- 성희롱·성폭력의 피신고인이 교수나 비정규교수강사로서 신고내용이 상당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피신고인의 강의를 정지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.

○ **조사는 피해자를 배려하여 행해집니다.**

- 조사는 본인출석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면조사로도 가능합니다.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도 되고, 출석 시 대리인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.
-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의 사람을 조사심의위원으로 포함하고 적절하게 자리를 배치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조사과정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과정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는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인의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○ **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합니다.**

- 피해자 등에 대한 의심·부인·비난·협박·회유 등이 있을 경우, 당해 행위가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일단 고지합니다. 고지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는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사건처리결과를 인권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적 정보는 삭제 후 게시합니다.
-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
○ **2차 가해 없이,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.**

- 처리중인 사건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판단이나 예측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- 특히, 피해자를 의심·부인·비난·협박·회유하는 등 2차 가해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사건종결 후에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- 피해자가 사건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.
- 필요시 언제든지 센터에 후속조치를 상의해 주십시오.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
---

## 문제가 제기된 구성원이 있다면

---

○ **문제행위는 무조건 중단되어야 합니다.**

- 누군가 피해를 호소한다면 그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.
-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,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, 자신의 행위가 문제인 줄 모르거나,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
-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지만,
-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문제행위가 될 수 있으니,
- 문제로 지목된 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중단되어야 합니다.

○ **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,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.**

-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.
-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조치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○ **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사과하고 다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.**

- 실수든 아니든,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고 뉘우쳐야 합니다.
- 사건 전에 피해자와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부당한 일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학업이나 업무성과가 좋다고 해서 부당한 일이 용인되는 것도 아닙니다.
- 자신의 침해행위 자체를 직시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○ **성폭력·인권침해에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.**

- 누구든지 제때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, 방관하지 말고, 구성원을 위해 적절하게 개입해 주십시오.
-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, 침해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을 살펴봐주십시오.

○ **기관의 문화를 다르게 만들어 주십시오.**

- 잘못된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.
- 업무 및 구성원 간 관계 모두에서 정의로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.
-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을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 기관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---

## 구성원에게 평소에 알려 주십시오.

---

### ○ 성희롱·성폭력이란,

- “성희롱”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합니다.
  - 가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  - 나.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연구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  - 다.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 - 라.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-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### ○ 인권침해란,

-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말합니다.
- 예)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·폭언·폭력·노동권 침해·인격모욕 등

### ○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알게 됐다면 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.

-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.
- 센터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.
-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온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올려주셔도 됩니다.
-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센터에 알려주십시오.
-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.

### ○ 성평등하고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갑시다.

-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그 역할만 다를 뿐, 모두가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입니다.
- 학업과 교류, 일상생활 등 모든 면에서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하고, 존중해야 합니다.
- 위계적인 관계를 벗어나 민주적인 관계와 양식을 만들어갑시다.
- 타인을 수단으로 삼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합시다.